

## ◎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-14호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·제한을 명하기 전, 의견제출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1월 17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###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·정지·제한 명령 전 의견 제출 통지

#### 1. 당사자

성명(명칭)	주소
프레스아리랑 (PressArirang)	25N Marengo Ave Pasadena, CA 91101 USA

#### 2.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

성명(명칭)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예정된 처분 내용	법적 근거
프레스아리랑 (PressArirang)	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(pressarirang.org) 내 게시되어 있는 28개의 게시글은 「국가보안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	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·정지 또는 제한(해당 게시물 삭제) 명령	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

\* 해당 게시글(URL)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,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

#### 3. 의견제출

- 1) 의견 제출 기한: 2025.2.26.(수)까지(공고일로부터 14일,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고려)
- 2) 제출처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
- 3) 담당: 유정민 주무관(전화: 02-2110-1566, 팩스: 02-2110-0140, jmevegy1013@korea.kr)

#### 4.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
- 1)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3)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4)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